

의안번호	2204178
의 퇴 인	황희의원
회 답 일	2024.10.25.
추계번호	24D2876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(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시설의 설치) 단서 신설	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및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제1항 (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시설의 설치) 단서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(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(제9조제1항제1호) 및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(제9조제1항제2호)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(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)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¹⁾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나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(총 225개소, 1,160km)

1) 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1.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.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.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.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

이 해당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환경이 위험한 구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

- (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) 어린이보호구역(16,490개소, 7,468km), 노인보호구역(3,679개소, 1,137km), 장애인보호구역(135개소, 35km)으로 총 20,304개소(8,640km)임²⁾
- (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비용)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 상 SB1급 방호울타리를 쓰고 있으며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1m당 24~26만원³⁾ 수준임
- 다만, 시·군·구별로 방호울타리의 설치와 철거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,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, 향후 방호울타리의 설치 수요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 소요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

2) 경찰청 2023년 12월 말 기준 통계

3) 도로 선형 및 설계에 따라 일부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음